

의안번호	2204689
의 퇴 인	임이자 의원
회 답 일	2024. 10. 22.
추 계 번호	24B4319

한국환경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제명	제명 “한국환경공단법”을 “한국기후환경공단법”으로 변경	의무규정
2	안 제1조(목적)	이 법은 <u>한국기후환경공단을 설립하여 기후위기의 심각한 영향을 예방하기 위한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사업을 수행하고 환경오염방지·환경개선·자원순환촉진 등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효과적으로 추진함으로써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고 환경친화적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u>	
3	안 제17조제1항(사업)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함(제1항) <u>1의2. 배출권 거래시장 등 국내 탄소시장의 활성화 및 안정화를 위한 정책지원 사업 <신설></u> 12.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사업, <u>기후위기 적응사업</u>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정책지원 사업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제명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안 제1조(목적)	
3	안 제17조제1항(사업)	

2. 상세 사유

□ 한국환경공단 명칭 변경 및 사업범위 확대(안 제명, 안 제1조 및 안 제17조제1항)

- 개정안은 한국환경공단의 명칭을 한국기후환경공단으로 변경하고, 공단의 사업 범위에 배출권 거래시장 등 국내 탄소시장의 활성화 및 안정화를 위한 정책지원 사업, 기후위기 적응사업 등을 추가하는 것임
- 현행 「한국환경공단법」 제23조¹⁾에 따라 정부 등은 한국환경공단의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자금 조달을 위해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으므로, 개정안의 공단 명칭 변경 및 사업 범위 확대를 위해 정부 등의 출연금 소요가 증가할 수 있음
 - － 2023년 한국환경공단의 수입 결산 현황을 보면, 수입 총액 2조 1,153억 2,000만원 중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출연금 등이 2조 178억 2,100만원으로 95.4%임

[표 1] 최근 3년(2021~2023) 한국환경공단 수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자금 출처	비중('23년)
총계	1,635,936	1,840,797	2,115,320		
환경개선특별회계 등	1,633,977	1,668,213	1,882,678		
수지차출연금	130,328	178,290	188,613	정부	8.92%
목적출연금	3,146	2,346	2,405	정부	0.11%
보조금	51,127	73,322	374,903	정부	17.72%
정부위탁수입	345,695	310,099	225,354	정부	10.65%
지자체위탁수입	826,237	836,417	847,882	지자체	40.08%
기타위탁수입	196,005	175,627	146,022	정부, 지자체 등	6.90%
자체사업수입 등	81,439	92,112	97,499		4.61%
기후대응기금	—	170,513	230,659		
목적출연금	—	1,166	839	정부	0.04%

- 1) 「한국환경공단법」 제23조(자금의 조달 등) ① 공단의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조달한다.
1.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出捐) 또는 보조
 2. 제17조에 따른 사업으로 생긴 수익금
 3. 제26조에 따른 차입금
 4. 제27조에 따른 채권의 발행으로 조성되는 자금
 5. 자산 운용 수익금
 6. 그 밖의 수입금
-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정부의 출연금 지급과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자금 출처	비중 (’23년)
보조금	-	78,565	196,167	정부	9.27%
정부위탁수입	-	32,405	32,229	정부	1.52%
기타위탁수입	-	58,377	1,424	정부, 지자체 등	0.07%
석면피해구제기금	1,959	2,071	1,983		
정부위탁수입	1,959	2,071	1,983	정부	0.09%

자료: 한국환경공단

- 한국환경공단에 따르면, 공단 명칭을 한국기후환경공단으로 변경하는 경우 청사 사인물 교체, CI디자인 교체 등을 위해 약 21억 6,200만원이 소요 될 것으로 추정되나, 공단의 사업 확대는 현 시점에서는 사업의 명확한 범위 및 집행 계획이 없어 추가재정소요를 예측하기 곤란하고, 개정안에 따른 명칭 변경 및 사업범위 확대로 인한 한국환경공단의 지출 증가로 인해 한국환경공단에 대한 정부 등의 출연금이 어느 정도 증가할지 알 수 없어, 개정안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

[표 2] 한국환경공단 명칭 변경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항목	기준	수량 (A, 개)	단가 (B, 천원)	추가재정소요 (C=A×B, 백만원)
총계				2,162
청사 옥외 사인물 (외벽, 주차장 등)	517건물	1,034	500	517
청사 옥내 사인물 (인테리어, 사무실 등)	1본부 9지역	10	100,000	1,000
업무용 차량 래핑	3,240대	6,480	22	143
공단기	60개	60	500	30
전산명(홈페이지 등)	1식	1	10,000	10
CI 디자인	1식	1	200,000	200
직원 업무수첩, 신분증 등	3,233명	3,233	81	262

자료: 한국환경공단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박인재	배아형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박인재	02-6788-4650	powerreset@nabo.go.kr